

#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

[내국인 기준]

'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.

## [이사물품 통관절차]

01. 이사자 요건 확인
  -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가 달라집니다.
02. 자동차 요건 확인
  - 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만 면세됩니다.
03. 이사업체 선정
  - 운송비용과 보험 등을 체크하세요.
04. 국내로 배송
  -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
05. 통관 예약
  - 통관희망일을 예약 하면 시간이 절약됩니다.
06. 통관 및 세금납부
  -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도 발급 받으세요
07. 국내 배송지 운송
  - 물품파손 시 피해구제를 접수하세요
08. 자동차 신규 검사
  - 검사 예약으로 시간을 절약하세요.
09. 환경 및 자기인증
  -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합니다.
10. 자동차 신규 등록
  - 지방세 납부, 신규등록증 발급

## ■ 이사자 요건 및 거주기간 확인

- ▶ 이사자 :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 
(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)
- ▶ 단기체류자 :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자
- ▶ 거주기간은 최초출국일부터 최종입국일 까지
- ▶ 이사자는 본인의 전체 거주기간 중 2/3이상을 외국에서 체류, 동반가족은 이사자와 4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가족

## ■ 면세 대상 물품

- ▶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「필수과세대상」을 제외한 물품은 면세
- ▶ 단기체류자는 해외 거주를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 (단, 자동차 제외)

■ 필수 과세대상 물품

- ▶ 자동차 (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 제외)
- ▶ 보석, 진주, 별갑, 산호, 호박,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
- ▶ 가정용으로서 입국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▶ 아래 표의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

물 품	가족수	수량
가구,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 (잡화 · 의류 등 개인용품 제외)	1 ~ 2명	1개
	3 ~ 4명	2개
	5 ~ 8명	3개
	9명이상	4개

■ 자동차 통관

- ▶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
- ▶ 이사자, 동반가족, 가족 명의로 해외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(다만, 가족 명의인 경우는 3개월 이상 사용 입증서류 첨부)
- ▶ 이사자 가구당 1대의 자동차
- ▶ 면세대상 :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
  - ※ 차대번호 'K'로 시작
- ▶ 과세가격 = (Blue Book 등 게재 신차가격 × 감가상각잔존율) + 운임 + 보험료
- ▶ 예상세액
  - 배기량 1,000CC초과 : 과세가격의 약 24%
  - 배기량 1,000CC이하 : 과세가격의 약 19%
  - ※ 자동차 예상세액 조회 : 관세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customs.go.kr>) 접속 → 조회업무서비스 → 예상세액조회 → 이사물품 자동차 → 자동차 정보 입력 → 조회

■ 자동차 통관 후 절차

- ▶ 신규검사 → 자기인증 → 환경인증 → 차량등록 이사물품으로 통관된 자동차는 자기 환경 인증 면제 또는 생략
  - 신규검사 및 자기인증 : 교통안전공단 (☎ 1577-0990 / [www.ts2020.kr](http://www.ts2020.kr))
  - 환경인증 :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검사처(0 032-590-5000 / [www.keco.or.kr](http://www.keco.or.kr))
  - 차량등록 : 관할 구청, 군청, 자동차등록사업소

■ 수입신고 및 유의사항

- ▶ 이사물품 수입신고는 이사자 명의로 하며 이사물품 반입내역서, 포장명세서 (P/L), 선하증권(B/L), 출입국사실증명서, 여권사본, 자동차 관련서류 (있는 경우에 한함) 제출
- ▶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함

■ 이사물품 수입통관 예약 제도

- ▶ 통관희망일 전날까지 예약할 경우 신속통관 서비스 제공(필수사항은 아님)

※ 예약절차

전자통관시스템 (<https://unipass.customs.go.kr>)에 접속 → 회원가입 (일반사용자)  
 → 로그인 → 전자신고 → 신고서작성 → 수입통관 → 이사회물통관예약신청서 →  
 예약사항 기재 후 전송

■ 문의사항 있을 경우 연락처

- 관세청 홈페이지  
<http://www.customs.go.kr>  
 (관세행정안내 → 개인용품 → 해외 이사회물품)
- 관세청 고객센터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 
 (해외 82-2-3438-5199)
- 서울세관 이사회물과 ☎ 02)510-1189~91
- 인천세관 인천항수입3과 ☎ 032)452-3271~4
- 북부산세관 통관지원과 ☎ 051)793-7132~5

■ [이사회물품 통관 OX 퀴즈 ]

번호	내 용	O/X
1	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여도 체류일자를 확인해야 한다.	O
	전체 기간 중 2/3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	
2	필수과세대상 물품도 중고는 면세된다.	X
	필수과세대상은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과세	
3	3개월 이상 사용한 가구, 가전제품은 모두 면세된다.	X
	가족 수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	
4	한국산 자동차는 모두 면세된다.	X
	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만 면세	
5	중고 자동차의 구입영수증을 제시하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다.	X
	신차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에 운임, 보험료를 합산한 가격 인정	
6	2대의 자동차는 이사회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다.	O
	가구당 1대만 이사회물품, 그 외는 일반수입	
7	자동차는 3개월 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면 통관된다.	X
	이사자, 동반가족, 가족 명의로 등록(가족명의로는 3개월 이상 사용 입증)	
8	와인 1병은 면세된다.	X
	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과세대상	